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68 발의연월일: 2021. 6. 22.

발 의 자: 김용판・유경준・송언석

강대식 · 김성원 · 이종성

박덕흠 • 권명호 • 박대수

윤재옥・추경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,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·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및 제5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"소방활동"을 "소방활동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소방대가"를 "소방본부,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, 소방대가"로 한다.

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
- 2.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를 위반하여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,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 니한 관계인

부 칙

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0조(관계인의 소방활동 등) -제20조(관계인의 소방활동) 관계 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, 재난. 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 -----소방본부, 소방 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없이 알려야 하며, 소방대가--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 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 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 제56조(과태료) ① 제19조제1항을 제5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 • 구급 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한다.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 재 또는 구조・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.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를 위반하여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,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